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됨에 따라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체,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9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제2호 중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을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명피해”를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소방서 및 경찰서”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시·군·구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넘어서는 규모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중운집이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

3. 그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경찰관서

가.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력 배치

나.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 출동 경력 확보

다. 긴급자동차용 통행로 확보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마.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바. 축제행사장 현장 지휘소 운영

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 소관 업무

2. 관할 소방관서

가.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력 근접 배치

나. 소방안전점검

다. 축제행사장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

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관할 소방관

서 소관업무

3. 그 밖에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기관에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협조 또는 역할 분담 사항

⑦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각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2.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지역안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경찰·소방, 전기·가스·통신 안전, 시설물 안전, 상인회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생략) <u><신설></u>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66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 <u>1. 시·군·구 차원의 안전관리역량을 넘어서는 규모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중운집이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u> <u>2.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중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서 동시에 열리는 경우</u> <u>3.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③ ----- ----- -----
② <u>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u>	

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4. 5. (생략)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생략)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

3. -----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
--

4. 5. (현행과 같음)

④ -----

-----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법 제66조의11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기관에 요

청할 수 있다.

1. 관할 경찰관서

가. 교통 및 보행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력
배치

나.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 출동
경력 확보

다. 긴급자동차용 통행로 확보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마.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바. 축제행사장 현장 지휘소
운영

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관할 경
찰관서 소관업무

2. 관할 소방관서

가. 긴급자동차 대기 및 소방
력 근접 배치

나. 소방안전점검

다. 축제행사장 현장지휘소
및 응급의료소 설치

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른
관할 소방관서 소관업무

3. 그 밖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신 설>

<신 설>

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기관에 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협조 또는 역할 분담 사항

⑦ 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안전협의회를, 시·군·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지역안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각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2.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지역안

<u><신 설></u>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u>전협의회를 개최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 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u> <u>⑨ 제7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경찰·소방, 전기·가스·통신 안전, 시설물 안전, 상인회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u> <u>⑩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⑪ ----- 제10항-----</u>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5 - 4124